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 과장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292호

시행일자 2019. 8. 29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

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약제기준부-3686호(2019. 8. 28)
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248호, 2019.8.27.)함을 알려드리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개정내역]

○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연령제한 삭제

○ 만성골수성백혈병에 'dasatinib'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

붙임: 주요공고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